

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반송자 공고
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제36조에 의거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를 하였으나,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연번	대상자		주 소	발급기한	지참물	비 고
	성명	생년월일				
1	최 혁	1998-12-11	청마로 170	2016.12.31	학생증 증명사진1매	

발급기한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의3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(☎032-560-3351)

2015년 12월 11일
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장

